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4 - 27호

임실군의회 김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7. 5.

임실군의회 의장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김정흠 의원)

1. 제정이유

- 임실군의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과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 군정 전반에 대한 쟁점 사안에 관하여 임실군민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를 도출하여 군민화합과 지속가능한 임실 발전을 위하여 임실군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설치, 기능에 대한 규정(안 제1조~제3조).
- 나.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등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7조).
- 다. 공론화위원회의 자문위원, 공론화 지원단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10조)
- 라. 군민참여단 구성, 여론 수렴 등 군민 의견 반영을 위한 규정(안 제11조~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부(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입법예고 : 2024. 7 . 5 . ~ 2024. 7 . 10 .

라. 불 임 :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공공정책 수립 및 지역 현안 해결에 관한 임실군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임실군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임실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론화를 추진하고 합의를 도출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군 공공정책 수립·추진 시 갈등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사항
2. 군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3. 군민 청원, 군민 제안 등의 방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쟁점 사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민적 신뢰가 높은 덕망 있고 중립적인 인사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역주민 대표 또는 기관·단체의 장
3.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
5.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안전 관련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해당 공론화 의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친인척 및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부의 안전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전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안전에 대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조사·연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군민참여단 구성) 위원회는 제1조에서 규정한 위원회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군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형 참여를 고려한다.

제11조(여론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최종결정사항의 권고)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 결정사항을 군수에게 권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수당 등 지원) ① 위원회의 위원 및 자문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김정흠 의원

□ 지방자치법

-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